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
자산

제6조의7제5항제1호 본문 중 “10을”을 “100을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자,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
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: 100만원

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
고시하는 방법

제23조의3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신고서의 심사 및 수리
여부 결정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) ① (생략)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~ 7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(생략)	제1조의2(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7(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) ① ~ ④ (생략)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 1.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(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)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	제6조의7(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100 을 -----

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
으로 하는 모집. 다만, 컴퓨터
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
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
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
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
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
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
있다.

2. 3. (생략)

⑥ ⑦ (생략)

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
한 등) ① 법 제24조에 따른 선
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
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. 다만,
다음 각 호의 선불카드 발행권
면금액의 최고한도는 해당 호에
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-----, <단서 삭제>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⑥ ⑦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
한 등) ① -----

-----,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2항
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
자치단체가 결식우려가 있는
아동을 대상으로 수급자, 사용
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
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
행하는 경우 : 100만원

② (생략)

제18조(자금조달방법)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23조의3(업무의 위탁)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(이하 이 조에서 “금융감독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탁한다.

1. ~ 13. (생략)

<신설>

②·③ (생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자금조달방법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3(업무의 위탁) ① ----

-----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신고서의 심사 및 수리여부 결정

②·③ (현행과 같음)